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4. 2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00년 4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4. 20)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김 종 록)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 출장소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증평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3.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구역내 종합행정추진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과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실·과 및 지소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생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생략)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부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삭제)	제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3.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구역내 종합행정 추진
(신설)	제5조(실·과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실·과 및 지소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제6조(조례규칙 등)	제7조(조례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②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별표 6]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 분	장의 직급	국장 또는 국장급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의 출장소	3급 또는 4급	4급	5급
시·자치구의 출장소	5급 또는 6급		
읍·면의 출장소	6급		